##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6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성환・박해철

박홍배 · 김정호 · 민병덕

송옥주 · 민형배 · 서영교

백승아 · 최기상 · 박홍근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함)을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 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

한편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정부에 따라 그 구성 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 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,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 효적으로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신설 등).

##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제7조의 기본계획을 제3조제3항의 사회적 대화 기반 추진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 용정책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.

- ② 특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고용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1.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
- 2.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
- 3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
-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1호의 위원이 위원

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 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.

- 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·산업별 연합단체,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.
- ⑥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, 전국적 규모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- ⑦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,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임명한다.
- ⑧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 및 노동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항과 제6항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- 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.
- ①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	제7조(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		
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	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7의2.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		
	<u> 운용에 관한 사항</u>	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의2(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		
	① 제7조의 기본계획을 제3조		
	제3항의 사회적 대화 기반 추		
	진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심		
	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		
	에 특별위원회를 둔다.		
	② 특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심		
	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		
	심의한다. 이 경우 특별위원회		
	의 심의는 고용정책심의회의		
	심의로 본다.		
	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	
	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1명		

- <u>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
- 1.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
- 2.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
- 3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
-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1호의 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 는 위원의 수와 사업주를 대표 하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.
- 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・산업별 연합단체,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  ⑥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, 전국적 규모의 소상공인・자영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
- ⑦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고 용노동부, 기획재정부, 산업통 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

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
장이 임명한다.

- 8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 및 노동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항과 제6항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.
- 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
   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
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
   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
   다.
- ①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설치 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